

홈 가든 커뮤니티 서비스 디스트릭트 (Home Garden Community Services District) 급수 차단 정책 (WATER SHUT-OFF POLICY)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지침("정책")으로 구성되며, 홈 가든 커뮤니티 서비스 디스트릭트("HGCSD" 또는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모든 비도매 주거용 수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디스트릭트의 총괄 관리자("총괄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을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다른 모든 수도 서비스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영어 버전은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비영어 번역본보다 우선합니다.

본 정책의 무료 인쇄본 1부는 요청 시 계정에 등록된 각 고객("기록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HGCSD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립할 경우, 본 정책과 그 번역본 각각은 HGCSD 웹사이트에서 public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스트릭트 본사에서 본 정책에 대한 public 열람은 항상 모든 public 구성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잠재적인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위의 전화번호로 디스트릭트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HSC § 116906(a)(4).]

다음 정책은 2025년 7월 17일에 열린 디스트릭트 이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1. 요금 납부 마감일; 체납; 유예 기간 및 면제:

(a) **요금 납부 기한:** 모든 월별 요금고지서는 발행된 달의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일이 디스트릭트의 휴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마감일은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연장됩니다. 체납 잔액이 있는 계정에 대해 received된 모든 지불금은 먼저 체납 잔액(본 정책에 따라 디스트릭트가 승인한 대체 지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그 다음 발생한 연체료, 요금, 이자 및 벌금, 그리고 finally新 規로 고지된 서비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b) **체납:** 요금고지서가 제때 지불되지 않으면, 관련 계정은 납부 마감일 다음 날 현지 시간 오전 12:00를 기해 체납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점 및 그 이후 매일 미납 및 연체된 원금에 대해 모든 해당 연체료, 벌금 및 이자가 발생합니다.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던 체납으로, 해결된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d) **월별 유예 기간:** 요금 납부 기한일 당시 이미 체납 상태가 아니었던 각 계정에 대해, 원금 계정 잔액이 해당 요금고지서가 발행된 달의 마지막 평일까지 디스트릭트에 완납되고 실제로 수령된 경우, 모든 해당 연체료, 벌금 및 이자는 면제됩니다. 최초 체납부터 본 면제가 적용되는 최종일까지의 기간을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HSC § 116914(a)(2).]

(e) **연간 면제:** 각 달의 첫째 날에, 전월의 요금 납부 기한일 당시 이미 체납 상태가 아니었던 각 체납 계정(해당 계정이 전월에 존재했거나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해 이미 발생한 모든 해당 연체료, 벌금 및 이자는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선행 12개월期間 동안 어떠한 면제도 받은 적이 없는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HSC § 116914(a)(2).]

2. 연체료, 이자 및 벌금; 추가 면제:

(a) **연체료:** 적시 납부 마감일이 만료되는 즉시, 디스트릭트의 운영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금액의 최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마감일 및 최초 연체료 금액은 각 월별 요금고지서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b) **벌금:** 디스트릭트의 운영 이사회는 수시로 결의를 통해 추가 벌금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모든 계정 또는 지정된 등급의 계정에 적용되지만,特定 계정 또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targeted 벌금은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의로 규정될 경우, 벌금은 체납 잔액에 최초 연체료가 부과된 후 각 subsequent 달의 첫 번째 평일에 체납 잔액에 assessed됩니다.

(c) **이자:** 이자는 디스트릭트의 운영 이사회가正當하게 채택한 결의에 의해 실제로 이자율이 설정된 경우에만 각 체납 계정의 미납 원금 잔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해당 금리는 연 10%(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0%(0%)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이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발생합니다.

(d) **면제:** 본 정책 내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는 미납 체납이 경제적 및/또는 의료적 곤란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미 발생한 연체료, 이자 및 벌금을 면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絶對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사회는 such 권한을 총괄 관리자에게 case-by-case basis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차단:

본 정책의 조건에 따라, 60일 이상 체납된 모든 계정 잔액에 대해 디스트릭트는 미터기를 잠그고/잠그는 방식으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 계정의 기록 고객은 관련 통지서 및 서비스 재개를 위해 본 정책 내 다른 곳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수수료 및/또는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지연 납부를 위한 기간 연장計劃, 분할 상환協議, 대체日程 또는 납부액 감면計劃:

서비스 차단을 피하기 위해, 기존 체납 잔액이 없는 계정이 계정 잔액 전부 또는 일부의 미납으로 인해 최초로 체납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기록 고객은 위 섹션 1에서 설정된 다음 요금 납부 기한일까지, 디스트릭트에 신청하고, 승인될 경우 체납 계정 잔액에 대해 본 섹션 내 지정된 하나 이상의 납부 옵션("대체 지불 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a) **지연 납부를 위한 기간 연장計劃:** 임박한 서비스 중단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사회는 고객이 제안한 모든 체납 요금의 전체 잔액에 대한 지연 납부 기간 연장計劃을 승인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본 정책에 따라 승인된 각 extension에 적용됩니다:

(i) 최대 최초 연장: 기록 고객의 서면 신청서는 잔액이 최초로 체납된 날로부터起算하여 full 납부를 6주를 초과하여 지연시키지 않는 기간 연장計劃을 이사회에 제안해야 합니다;

(ii) 이사회 재량: 이사회의單獨且絶對적인 재량에 따라, 지연 납부에 대한 제안된計劃은 기록 고객이 제안한 대로 승인되거나, 요청된 것과 다른 지연 기간과 함께 승인되거나,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extension이 디스트릭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고 요청된 extension이 적용 법률에 의해 otherwise要求되지 않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iii) 총괄 관리자에 의한 추가 연장: 이사회가 승인한 최초 extension 만료 전에, 총괄 관리자는 서면으로 서명하여 추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하나의 추가 extension을 승인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총괄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such 추가 extension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총괄 관리자가 apparently 승인한 extension의 미승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iv) 지연 납부 마감일 통지: 각 연장된 납부일은 기록 고객의 디스트릭트에 등록된 가장 최근 우편 주소로 발송될 서면 문서 내에 명시됩니다;
- (v) 마감일까지의 잔액 실제 수령: 전체 체납 잔액은 유효한 연장된 납부 기한일까지 디스트릭트에 실제로 수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vi) 연장은 체납 잔액에만 적용: 계정의 모든新規且비체납 서비스 요금(최초 체납開始 후 발행된 각 디스트릭트 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표시됨)은 제때且전액 납부(적어도 해당 후속 요금고지서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예 기간 내에)되어야 하며, 전체 체납 잔액이 디스트릭트에 실제로 수령될 때까지 계정은 체납 후의 모든 디스트릭트 서비스 요금고지서에 대해 current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b) 분할 상환協議 (Amortization Agreement):** 임박한 서비스 중단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디스트릭트는 모든 체납 요금의 전체 잔액을 mutually agreed upon 기간(최초 체납 발생일로부터起算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定期적으로分期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할 상환協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각 분할 상환協議에 적용되며, 해당되는範圍內에서 승인된 분할 상환協議의 implied 조건 및 조항을 구성합니다.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 (i) 허용 가능한 최대 기간: 기록 고객의 서면 신청서는 잔액이 최초로 체납된 날로부터起算하여 12개월 이내에 디스트릭트가 전체 체납 잔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분할 상환協議를 제안해야 합니다;
- (ii) 신청자 서명된協議書 제안: 기록 고객의 신청서는 총괄 관리자(또는 지정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디스트릭트가 승인한 서식의 proposed 분할 상환協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기록 고객이 서명并日付를 기입해야 합니다;
- (iii) 60일 이내 분할 상환協議: 체납 잔액의 25%(25%)를 수령时, 총괄 관리자는 300 미국 달러 (\$300.00 USD)를 초과하지 않는 잔여 체납 잔액에 대해, 잔액이 최초로 체납된 날로부터起算하여 60일 이내에 전체 체납 잔액을 디스트릭트에 납부할 것을要求하는, 디스트릭트의 법률 고문이 사전에 승인한 서식의 서면 분할 상환協議에 서명할 권한과 재량권을 가집니다;
- (iv) 60일 초과 분할 상환協議, 최초 납부 없음: 총괄 관리자는 잔액이 최초로 체납된 날로부터起算하여 60일 이후이지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마감일까지 잔여 체납 잔액의 전액 상환을要求하는, 디스트릭트의 법률 고문이 사전에 승인한 서식의 서면 분할 상환協議를 승인할 권한과 재량권을 가집니다. 디스트릭트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려면, such協議는 먼저 이사회가의单独且絶對적인 재량에 의해確認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고객이 제안한 조건 또는 총괄 관리자가最初 승인한 조건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는 분할 상환協議 서명을 승인하거나, 최초 납부금 유무에 관계없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GC § 60372(c).]
- (v)協議 서명 마감일: 본 정책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스트릭트가 어떤 분할 상환協議(고객이 요청한 조건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는協議 포함)의 서명을 승인할 때마다, 기록 고객은 이를 수락할 경우, 고객 서명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5영업일 이내에 such 서명된協議서를 총괄 관리자(또는 지정자)에게 promptly 서명,日付 기입并제출해야 합니다;
- (vi) 분할 상환協議에 따른 납부: 체납 잔액은 분할 상환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야 하며, 매달 해당 금액이 기록 고객의 월별 요금고지서에 추가됩니다. 분할 상환協議가 있는 계정에 대해 received된 모든 지불금은 먼저 체납 잔액, 그 다음 발생한 연체료, 요금, 이자 및 벌금, finally新規로 고지된 서비스 요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 (vii) 분할 상환은 체납 잔액에만 적용: 계정의 모든新規且비체납 서비스 요금(최초 체납開始 후 발행된 각 디스트릭트 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표시됨)은 제때且전액 납부(적어도 해당 후속 요금고지서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예 기간 내에)되어야 하며, 전체 체납 잔액이 디스트릭트에 실제로 수령될 때까지 계정은 체납 후의 모든 디스트릭트 서비스 요금고지서에 대해 current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c) 대체 납부日程 (Alternative Payment Schedule):** 임박한 서비스 중단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사회는 최초 체납 발생일로부터起算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전체 체납 잔액을 납부하기 위한, 정상적인 요금 납부 기한일과 다른 대체 납부日程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사회가 명

시적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정책에 따라 승인된 각 대체 납부日程에 적용됩니다:

- (i) 기록 고객은 월별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디스트릭트의 정상적인 요금고지 주기 동안 요금을 납부할 financial ability가 없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ii) 디스트릭트는 고객이 자신의 요청을 support하기 위해 지정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대체 납부日程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iii)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객은 대체 납부日程에 따라 체납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인된 대체 납부日程은 디스트릭트의 정규 납부 주기(본 정책 내 규정된 대로)와 일치하지 않는定期 납부를規定하거나, 디스트릭트의 정규 납부 주기보다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이루어지는 납부를規定할 수 있습니다;
- (iv) 대체 납부日程 기간 동안 고객의 계정은 이후에 고지된 모든 서비스 요금에 대해 current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 (v) 이사회가 승인한 대체 납부日程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due 금액 및 해당 마감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체 납부日程 사본은 미국 우편 또는 대면으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d) 감면 납부 (Reduced Payment): 디스트릭트에 owed된 체납 계정 잔액의 감면은, 주 법률에 공공 자금의 기부에 대한 제한과 디스트릭트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실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Proposition 218(1996)이 포함된期間 동안 본 정책下에서 선호되지 않지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만이 such 감면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으로부터 보조받지 않고 완전히 자금 조달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할 때 미납 체납 잔액의 부분적 또는 전액 감면을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음 사항은 본 정책下에서의 납부액 감면 요청 각각에 적용됩니다:

- (i) 이사회는 고객이 요청을 support하기 위해 지정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 (ii) 이사회 재량: 이사회가 單獨且絶對적인 재량에 따라, 기록 고객이 제안한 요청된 감면은 이사회 전원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승인될 수 있으며, 감면이 적용 법률과 어떤 정도로도 clearly衝突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信じて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HSC § 116910(b)(1)(C).]

(e) 심각한 건강 위협 및 재정적 납부 불능: 계정 잔액이 최초로 체납 상태가 된 주거용 서비스 고객은 본 섹션에 따라, 자신이 보건안전법 § 116910(a)(2)에 정의된 대로 재정적으로 납부할能力이 없으며, 고객 또는 그 세입자가 디스트릭트에 주거용 서비스 중단이 체납 계정 잔액이 있는该 건물의 거주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posed할 것임을 인증하는 주치의의 유효한證明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디스트릭트에 demonstrate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uch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해당 계정이 현재 본 섹션 내 제공된 다양한 대체 지불 계약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이 모두 적용됩니다:

- (i) 기록 고객이 하나 이상에 참여할 willingness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디스트릭트에 제때 제출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른 분할 상환協議, 대체 납부日程 또는 지연 또는 감면 납부計劃 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 (ii) 필요한 각 통지를 제공한 후, 고객이 60일 동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스트릭트는 본 정책에 따라 서비스 차단을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 (A) 고객이 이후에 고지된 서비스 요금에 대해 current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B) 디스트릭트가 승인한 분할 상환協議, 대체 납부日程 또는 지연 또는 감면 납부計劃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HSC § 116910; GC 60372(b)(3).]

(f) 신청서 서식及拒否 사유: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되는 각 신청서는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서식(신청자가 첨부한 추가 서류 및/또는 문서와 함께)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즉시 또는 이후拒否 사유에는 다음 각각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신청자가 위증罰下에서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 (ii) 신청서에 불완전, 불충분, false 또는 otherwise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iii) 신청자가所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iv) 본 정책에 따른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이 본 정책下에서 승인되지 않는 경우;
 - (v) 신청자 또는 해당 계정이 요청된 제안된 납부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 (vi) 신청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경우;
 - (vii) 해당 계정이 현재 디스트릭트가 승인한 하나 이상의 대체 지불 계약下에 있거나, 선행 12개월期間 동안 such 계정이 고객의 조건 및 조항 미준수로 인해 ultimately不成功했던 하나 이상의 대체 지불 계약下에 있었던 경우; 및/또는
 - (viii) 적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다른任何 유효한 사유.
- (g) 납부 옵션 선택:** 이사회는 본 정책에 따라 디스트릭트에 제출된特定 신청서와 관련하여 기록 고객의 specific 요청 또는 제안과 관계없이, 어떤 대체 지불 계약 및 관련 parameters가 승인될지 여부를 선택할單獨且絶對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HSC §116910(b)(2).]

5. 서면 통지서 번역:

본 정책에 따라 서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록 고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각 서면 통지서(courtesy 통지서 제외)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 116922의 번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信じて는 때마다, 그녀/그는 본 정책에 명시된 각 통지서의 번역을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달하도록 authorized됩니다. 각 such 번역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서비스 수수료로 assessed되어 해당 체납 계정의 원금 잔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HSC § 116922.]

6. 서비스 중단 timing에 대한 제한:

- (a) **공공辦公時間 동안のみ 차단:** 디스트릭트는 서비스에 대한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 정책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디스트릭트의 사무실이 public에 개방된 시간(토요일, 일요일 또는 디스트릭트 휴일 포함) 이외의任何 시간에開始시키지 않습니다. [Gov. Code § 60374.]
- (b) **최소 미납 체납 기간:** 디스트릭트는 60일 이상 존재하지 않은任何 미납 체납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HSC § 116908(a)(1)(A).]
- (c) **적시 appeal이 pending 중일 때 차단 없음:** 디스트릭트는 적시에 제출된 서면 고객 dispute, complaint 또는 appeal이 실제로 pending 중인 동안에는 미납 체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HSC § 116908(b); GC § 60372(b)(1).]

7. 체납及임박한 서비스 중단 통지:

- (a) 유예 기간 만료 후 첫 번째 평일或其以後, 체납 상태로 남아 있는 각 계정에 대해, 디스트릭트 직원은 미납 체납及임박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서("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such 통지서는 계정에 등록된 고객("기록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해당 고객의 우편 주소가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주소가 기록 고객 이외의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디스트릭트에 의해 개별적으로 미터기가 설치된 경우, 해당 통지서 사본은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로도 발송되어야 하며 "거주자" 앞으로 발송되어야 함

니다. [HSC § 116908(a)(1)(C).]

(b) **서면 통지서 내용:** 임박한 중단 통지서에는 최소한以下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고객 성명 및 주소;
- (ii) 체납 금액;
- (iii) 고객이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금을 납부하거나 지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짜;
- (iv) 체납 요금 납부를 위한 기간 연장 신청 절차 설명;
- (v) 요금고지서 검토 및 appeal을 위한 청원 절차 설명;
- (vi) 고객이 지연, 감면 또는 대체 납부日程(체납 요금 분할 상환 포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 (vii) 자격을 갖춘 경우, 주거 거주자는 체납 계정에 due 수 있는任何 금액을 납부할 required 없이 고객이 될 및 그 후 서비스 요금이 부과될 권리가 있다는 진술; [HSC § 116916(b).]
- (viii) 고객이 재정적 지원(該當할 경우民間, 지방, 주 또는聯邦 출처 포함)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
- (ix) 서비스 중단이 승인될 날짜(60일 이상의 미납 체납 기간이 있는 날짜여야 함);
- (x) 서비스가 실제로 차단된 경우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xi) 수도 배급 시스템에 대한 미승인 재연결을 achieved하기 위한變造는刑事犯罪이며 고객은 디스트릭트 시설에 대한任何損害及潛在적인刑事責任에責任을 질 것이라는 경고;
- (xii) 기존 미터기 또는 서비스 측관에 잠금 가능한 valve 또는 서비스 차단 메커니즘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장치가 설치되고 해당 비용이所有 관련 재연결 수수료 및 체납 요금에 추가로 고객에게 청구될 것임을 disclosure; 그리고
- (xiii) 적용 법률 또는 총괄 관리자에 의해 otherwise要求될 수 있는 기타 내용.

[HSC § 116908(a)(1)(C).]

(c) **전화 통지:** 발송된 임박한 중단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디스트릭트 직원은 기록 고객에게 전화로 통지를 제공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객에게 본 정책의 인쇄본 및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一般적으로 다음 포함)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i) 대체 납부日程;
- (ii) 지연 납부;
- (iii) 최소 납부;
- (iv) 체납 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분할 상환協議 요청 절차;
- (v) 요금고지서 검토 및 appeal 청원; 그리고
- (vi) 적용 법률에 의해要求된所有 기타 정보.

(d) **발송된 통지서 반송:** 발송된 임박한 중단 통지서가 반송되고 디스트릭트가 전화로 고객에게 연락하여 임박한 중단에 대한 전화 통지를 제공하려 시도했지만不成功한 경우, 디스트릭트는 thereafter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를 방문하고該處의 눈에 띄는場所에 임박한 중단 통지서 사본 및 본 정책 사본을 놓아두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디스트릭트는 otherwise 동일한 일이 occur하도록 해야 합니다. [HSC § 116908(a)(2).]

8. 필요한 통지의 최소량; 실질적 compliance:

(a)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우편, 전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 방문 시 대면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는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기 최소 7영업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디스트릭트 직원은 normally 체납 상태로 남아 있는 관련 요금고지서에 대한 유예 기간 만료 후 첫 번째 평일에 본 통지를 발행합니다. 디스트릭트는 고객의 납부가 최소 60일 동안 체납될 때까지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

하지 않습니다. [HSC § 116908.]

(b) **특별 게시 통지:** 재정적 납부 불능 및 인증된 생명 또는 건강 위협을 based upon하여 분할 상환協議, 대체 납부日程 또는 지연 또는 감면 납부計劃이 유효한 각 계정에 대해, 디스트릭트는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주소의 prominent且 눈에 띄는 위치에 디스트릭트의 서비스 중단 의도에 대한 최종 통지서("차단 의도 최종 통지서")를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HSC § 116910(b)(3).]

(c) **최종 48시간 전 전화 또는 대면 통지:** 총괄 관리자는 서비스 중단 최소 48시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该 건물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且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디스트릭트의 전화 또는 대면 연락 시도가不成功한 경우, 디스트릭트는 thereafter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주소로 최종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该处의 눈에 띄는 場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項에 규정된 duly 제공된 차단 의도 최종 통지서는 본項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 연락이不成功하게 시도될 때마다 본項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PUC § 10010.1(b).]

(d) **해당 연령자及 dependent成人을 위한 제3자 통지:**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서식에서, 65세 이상이거나 캘리포니아 복지기관법 § 15610.23에 under dependent成人으로 해당하는任何 주거용 기록 고객은, 자신의 계정이 미납 체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대상이 될 때 디스트릭트가 연락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갖추려면, 기록 고객은授權 서식에 서명해야 하며 제3자도 서식에 표시된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utilizing한 통지 수신에 동의하는 서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디스트릭트의 제3자에 대한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전송, 이메일, 우편 또는 대면으로 accomplished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required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디스트릭트는 다음 중 하나로 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기 최소 7영업일 전에 제3자에게 서비스 임박한 중단 통지서 사본을 발송함으로써; 또는

(ii) 제3자에게 본 섹션에 규정된 최종 48시간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PUC § 10010.1(c).]

(e) **실질적 compliance:** 개인이 본 정책 내 지정된任何 통지를 실제且제때에 receive할 때(구두, 서면, 전자 또는 전화로 receive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의 통지 요건에 대한 실질적 compliance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통지의 방식 또는 전달에 있는任何實際, apparent 또는潛在적인結陷과 관계없이如此합니다.

9. 체납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공된 각 통지에 assessed되는 서비스 수수료:

체납 계정 잔액으로 인해 디스트릭트가 제공하는 각通知는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될 수 있으며 체납 계정 잔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서비스 수수료 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설정됩니다.

10. 서비스 재개:

(a) **이사회 설정 복구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고객은 이사회 결의로 설정된 재연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연결 수수료는 서비스 복구의實際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근무時間外 복구 수수료:**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이전 또는 오후 5시 이후, 또는 주말 또는 디스트릭트 휴일 동안 복구되는 서비스에는更高的 근무時間外 요금을反映하는 재연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규辦公時間 이후에는 고객이 근무時間外 재연결 수수료 및所有 체납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知情并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c)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재연결 수수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재연결 수수료는 디스트릭트의 정규辦公時間 동안 발생하는 재연결의 경우 50 미국 달러(\$50.00 USD)이며 다른任何 시간에 발생하는 재연결의 경우 150 미국 달러(\$150.00 USD)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1년 1월 1일左右부터 시작하여 매년 관련 소비자物價指數에 따라 자동으로

(i) 저소득 가구: 본 정책에 따라, 기록상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거나,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 116914(b)조에 명시된 기준(특정 공공 부조 혜택 수급 포함)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저소득 가구로 간주됩니다.

(d) 서비스가 차단된 주소에서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는 구역 직원은 결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재연결에 필요한 요금 및 수수료 결제를 위해 구역의 요금 청구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 구역은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미납된 금액 및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와 관련된 모든 체납 금액에 대한 결제를 구역이 받은 다음 영업일 종료 전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f) 구역 직원이나 구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물리적으로 재연결된 상수도 서비스는 벌금, 과태료 및/또는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물리적 재연결 시도 또는 실행으로 발생하거나 이에 기인한 모든 손해는 기록상 고객의 책임입니다.

11. 청구서 이의 제기, 항소 또는 검토 절차; 조사 요청:

(a) 청구서 검토: 청구서 검토 요청("Bill Review")은 청구서가 기록상 고객에게 우송되거나 전달된 날짜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구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각 검토 요청에 대해 다음 모두가 적용됩니다.

(i) 적시에 청구서 검토 요청을 접수하면, 총괄 관리자 또는 그/그녀가 지정한 자는 일반적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행정 오류에 대한 일반 검토와 함께 기록상 고객이 특정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하며, 이는 구역 직원이 과도한 시간과 자원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합니다.

(ii) 구역은 5영업일 이내에 구두, 전화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하거나, 응답하기까지 시간 연장이 필요함을 기록상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iii) 기록상 고객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구역으로부터 적시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기록상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다음을 적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A) 본 조에 규정된 대로 총괄 관리자에게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을 제출함; 및/또는

(B) 청구 금액에 대해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함 (이사회는 이를 이사회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iv) 오류 수정: 구역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총괄 관리자는 오류 수정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또는 최초 유예 기간 종료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수정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HSC § 116908(a)(1)(C)(v).]

(b) 총괄 관리자에 대한 불만 또는 조사 요청: 기록상 고객은 청구서가 우송되거나 전달된 날짜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구역이 승인한 양식으로 해당 청구서의 서비스 또는 요금에 대한 서면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을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 또는 청구 담당자에 대한 기타 모든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은 조례 제07-호(2023) 제2-500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조에 따라 제출된 각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i) 총괄 관리자의 재량: 총괄 관리자 또는 그/그녀가 지정한 자는 특정 청구서의 서비스 또는 요금, 청구 과정 및/또는 구역 직원과 관련된 각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의 처리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며,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ii) 오류 수정: 총괄 관리자가 구역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총괄 관리자는 오류 수정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또는 최초 유예 기간 종료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수정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iii) 이사회에 대한 항소: 총괄 관리자의 조치 또는 결정은 조례 제07-호(2023) 제2-500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최종 조치 권한을 이사회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GC § 60372(d).]

(iv) 총괄 관리자 관련 불만 또는 조사: 본 조 내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 관리자가 불만 사항 또는 조사 요청의 초점이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총괄 관리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승인된 이사회 위원회로 전달하며, 이에 대해서는 조례 제07-호(2023) 제2-500조에 따른 항소 절차만 적용됩니다. [GC § 60372(c)]

(c) 이사회에 청구서 이의 제기 또는 항소: 기록상 고객은 조례 제07-호(2023) 제2-50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만 청구서에 기재된 요금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으나, 다음 모두가 추가로 적용되며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i) 항소 기한: 기록상 고객은 총괄 관리자의 적시 청구서 검토 요청에 대한 응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또는 총괄 관리자가 적시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총괄 관리자의 응답 마감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또는 해당 청구서의 최초 유예 기간 만료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서면으로 요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해야 합니다.

(ii)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의 결정: 이사회는 최종 조치 권한을 이사회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iii) 오류 수정: 이사회가 구역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총괄 관리자는 오류 수정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또는 최초 유예 기간 종료일 중 더 늦은 날짜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수정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HSC § 116906(a)(3).]

(d) 항소 진행 중 차단 금지: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에 대한 항소권을 적시에 행사하는 경우, 구역은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e) 성공적 항소 시 특정 연체료 면제: 이사회에 대한 항소가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경우, 해당 항소가 진행되던 기간 동안 본 정책에 따라 부과된 모든 연체료 및 관련 요금은 구역의 오류 또는 과실로 인해 solely 부과된那些費用에 대해 면제됩니다.

12. 미납 체납에 따른 서비스 차단 연간 보고서: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자는 미납 체납으로 인한 실제 서비스 차단 총 횟수를 표시하는 주 수자원 통제委員會(SWRCB)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SWRCB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자는 매년 1월경까지 전년도 기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보고서 초안을 승인하면, 총괄 관리자 또는 지정자는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 § 116918 및/또는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표제/제목의 효력:

본 정책에 포함된 절 및 항의 표제와 제목은 조직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